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공고

주식회사 오뚜기는 오뚜기라면지주 주식회사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2년 8월 2일을 기준일로 정하며,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가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주식회사 오뚜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05 (평촌동)

대표이사 황성만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KB 국민은행장 이재근